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44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장철민·김한규·한병도

김준혁 • 한정애 • 진선미

조승래 • 민병덕 • 허 영

복기왕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작물, 계단,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 밖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물과 담장"을 "건축물·담장·공작물·계단 ·주차장·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u>건축물과 담장</u> 은 건축선의	① <u>건축물·담장·공작물·계</u>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	단·주차장·화단, 영업과 관련
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한 시설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